



시보는 공문시행에 대체하는 효력을 갖습니다.

www.namwon.go.kr

제65호 2022. 10. 14(금)

선 람	기관 의 장

고 시

- 남원시 고시 제2022-138호 도시계획시설(도로:중로3-33호선)사업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1
- 남원시 고시 제2022-139호 도시계획시설(도로:소로2-4호선,소로2-194호선)사업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4
- 남원시 고시 제2022-140호 도시계획시설(도로:소로3-447호선)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6

공 고

- 남원시 공고 제2022-2005호 남원시 공인 조례안 입법예고----- 7
- 남원시 공고 제2022-2006호 남원시 행정정보공개 조례안 입법예고-----15
- 남원시 공고 제2022-2008호 도시계획시설(도로:소로1-46호선)실시계획 열람 및 사업인정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청취
공고(드래곤관광단지 진입도로 개설사업)-----23
- 남원시 공고 제2022-2011호 도로지정공고-----31
- 남원시 공고 제2022-2019호 남원시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32
- 남원시 공고 제2022-2020호 남원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지원 조례안 입법예고-----39

회 람										
--------	--	--	--	--	--	--	--	--	--	--

남원시 고시 제2022-138호

도시계획시설(도로:중로3-33호선)사업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남원 도시계획시설(중로3-33호선)사업인 『남원 신정동 오투그란데 1차 퍼스트시티 공동주택 신축에 따른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 제8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7조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을 인가하고 같은법 제9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하고, 이에 따른 관계도서는 남원시 도시과(☎ 063-620-6452)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남 원 시 장

2022년 10월 14일

1. 사업의 종류 : 남원 도시계획시설(도로:중로3-33호선)사업
2. 사업의 명칭 및 시행지의 위치, 사업의 규모
 - 가. 명 칭 : 남원 신정동 오투그란데 1차 퍼스트시티 공동주택 신축에 따른 도시계획도로 개설
 - 나. 사업의 위치 및 규모
 - 사업의 위치 : 남원시 신정동 116-138번지 일원
 - 사업의 규모 : L=363m, B=13m ~ 18m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가. 성 명 : (주)에버종합건설 대표 최산성
 - 나. 주 소 : 전북 익산시 익산대로 124(중앙동2가)
4.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 사업인가일로부터 ~ 2023. 10. 05.
5. 사업시행지의 위치도, 계획평면도 및 공사설계도서 : 실음생략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및 물건과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 붙임참조)

<편입 토지 조서>

번호	지 번	지 목	지 적 (㎡)	편입 면적 (㎡)	소 유 자		소유권이외의 권리자		비고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합 계			19,009	5,426					
1	95	전	169	153	주택도시보증공사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			
2	96-2	전	84	84	주택도시보증공사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			
3	97-1	전	778	773	주택도시보증공사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			
4	98-1	전	33	33	양*호 양*란 양*호 양*임 양*식 양*호 양*순 이*금	서울특별시 관악구 문성로**길 32,2층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길 21, 에이동 3403호 경기도 포천시 호국로 ***번길 18, 403호 전라남도 영암군 영암읍 서문안길 ** 전라북도 남원시 칠승리길 ** 서울특별시 관악구 당곡2길 **, 비02호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대로 **길 20-6 전라북도 남원시 칠승리길 **			
5	101-1	전	311	311	주택도시보증공사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			
6	102	전	1,111	662	주택도시보증공사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			
7	106-1	전	166	166	주택도시보증공사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			
8	106-2	전	650	28	주택도시보증공사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			
9	113-2	답	93	93	주택도시보증공사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			
10	113-4	답	8	8	(주) 에버종합건설	익산시 익산대로 124			
11	116-18	임야	334	7	주택도시보증공사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			
12	116-20	임야	115	27	주택도시보증공사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			
13	116-29	임야	87	18	주택도시보증공사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			
14	116-57	임야	2,559	65	주택도시보증공사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			
15	116-138	전	2,065	796	주택도시보증공사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			
16	116-139	임야	10	10	주택도시보증공사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			
17	116-140	임야	3,355	506	주택도시보증공사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			
18	116-142	임야	2,577	327	주택도시보증공사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			
19	116-143	전	298	298	주택도시보증공사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			
20	116-145	전	362	197	주택도시보증공사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			
21	116-152	전	109	22	주택도시보증공사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			
22	116-153	전	2,887	64	주택도시보증공사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			
23	116-159	전	83	13	주택도시보증공사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			
24	155-6	답	390	390	주택도시보증공사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			
25	155-8	답	118	118	박*진	전라북도 남원시 총정로 310, 102동 ***3호			
26	155-9	도로	75	75	김*권	남원 주천면 용*리			
27	155-11	도로	9	9	국(건설부)				

번호	지 번	지 목	지 적 (㎡)	편입 면적 (㎡)	소 유 자		소유권이외의 권리자		비고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28	155-16	도로	1	1	국 건설부				
29	155-17	답	37	37	박*진	전라북도 남원시 충정로 310, 102동 1**3호			
30	155-18	도로	16	16	김*권	남원 주천면 용*리			사정 토지
31	795-15	구거	55	55	국(농림축산식품부)				
32	797-6	도로	60	60	국(건설부)				
33	797-9	도로	4	4	국 건설부				

수용되거나 사용할 물건조사

- 지장물 없음

남원시 고시 제2022-139호

도시계획시설(도로:소로2-4호선,소로2-194호선)사업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남원 도시계획시설(소로2-4호선,소로2-194호선)사업인 『남원 신정동 오투그란데 2차 디아트 공동주택 신축에 따른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 제8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7조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을 인가하고 같은법 제9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하고, 이에 따른 관계도서는 남원시 도시과(☎063-620-6452)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남 원 시 장

2022년 10월 14일

1. 사업의 종류 : 남원 도시계획시설(도로:소로2-4호선,소로2-194호선)사업
2. 사업의 명칭 및 시행지의 위치, 사업의 규모
 - 가. 명 칭 : 남원 신정동 오투그란데 2차 디아트 공동주택 신축에 따른 도시계획도로 개설
 - 나. 사업의 위치 및 규모
 - 사업의 위치 : 남원시 신정동 116-18번지 일원
 - 사업의 규모
 - ┌ 소로2-4호선 : L=90m, B=8m
 - └ 소로2-194호선 : L=155m, B=1.4m~2.8m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가. 성 명 : (주)에버종합건설 대표 최산성
 - 나. 주 소 : 전북 익산시 익산대로 124(중앙동2가)
4.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 사업인가일로부터 ~ 2023. 11. 16.
5. 사업시행지의 위치도, 계획평면도 및 공사설계도서 : 실음생략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및 물건과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 붙임참조)

〈편입 토지 조서〉

□ 수용되거나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번호	동	지 번	지목	지적면적 (㎡)	편입면적 (㎡)	소 유 자		소유권이외의 권리자		비 고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합 계			19필지	5,155	1,212					
1	신정동	37-4	대	27	27	주택도시보증공사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			
2	신정동	106-2	전	650	173	주택도시보증공사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			
3	신정동	107-3	대	799	116	주택도시보증공사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			
4	신정동	108-3	도로	36	4	주택도시보증공사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			
5	신정동	108-4	전	13	9	주택도시보증공사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			
6	신정동	108-5	도로	95	95	서*치	남원시 왕정동 5*2			
7	신정동	116-32	임야	10	4	주택도시보증공사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			
8	신정동	116-33	대	254	4	주택도시보증공사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			
9	신정동	116-77	대	467	1	주택도시보증공사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			
10	신정동	116-151	전	1,578	346	주택도시보증공사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			
11	신정동	116-152	전	109	75	주택도시보증공사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			
12	신정동	116-156	전	1	1	주택도시보증공사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			
13	신정동	116-157	도로	195	195	국 기획재정부				
14	신정동	116-158	도로	91	91	조*환	남원시 왕정동 4*0			
15	왕정동	513-28	도로	18	18	국 기획재정부				
16	왕정동	513-29	답	7	7	주택도시보증공사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			
17	왕정동	617-1	도로	762	3	국 건설부				
18	왕정동	617-2	도로	39	39	국 건설부				
19	왕정동	617-3	도로	4	4	국 건설부				

□ 수용되거나 사용할 물건조서

- 지장물 없음

남원시 고시 제2022-140호

남원 도시관리계획(도로:소로3-447호선)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

남원 도시관리계획(도로:소로3-447호선) 결정(변경) 사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규정에 따라 결정(변경)하고, 같은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승인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남원시 도시과(☎063-620-6452)에 비치하고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남 원 시 장
2022년 10월 14일

1. 남원 도시관리계획(도로:소로3-447호선)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 조서 가. 도시계획시설(도로:소로3-447호선) 결정(변경) 조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폐지	소로	3	447	6	집산 도로	170	중로3-201 인월리 12-2	대로3-201 서무리 688-77	일반 도로	-	남원시고시 제2022-80호 (2022-6.17.)	

■ 도시계획시설(도로:소로3-447호선) 결정(변경)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소로3-447	-	○ 폐지 - B= 6m, L= 170m	○ 용도지역간 완충역할 등을 위해 지정하였으나 주변 도시계획시설(도로)을 통해 진출입이 가능하고 계획 노선 내 건축물 입지 등 도로 개설의 효용성 저조에 따라 금회 폐지

2. 남원 도시관리계획(도시:소로3-447호선)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고시도 : “실음생략”

남원시 공고 제2022 - 2005호

「남원시 공인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 등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남원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0월 11일

남 원 시 장**남원시 공인 조례안 입법예고****1. 개정이유**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에 따른 조항을 반영하고, 공인 글씨체를 시민이 공인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변경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근거 조항 규정 (안 제1조)

나. 공인 글씨체 변경 (안 제4조제1항)

(현행) 한글 전서체 → (변경안) 훈민정음 창제 당시의 자체

3. 입법예고기간 : 2022. 10. 11. ~ 2022. 10. 31. (20일간)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개인은 2022년 10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남원시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사항

-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이유)
-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나. 의견 제출할 곳

- (우 55738) 남원시 시청로 60, 남원시청 행정지원과 시정지원담당

다. 의견 제출 방법

- 직접방문 또는 우편발송(마감일 소인 유효), Fax(063-620-6704)
이메일(rijenje@korea.kr)

5.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남원시청 행정지원과(063-620-609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6. 남원시 공인 조례안 : 붙임

남원시 공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출연월일: 2022. 10.

제 출 자: 남 원 시 장

제안설명자: 행정지원과장

1. 개정이유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에 따른조항을 반영하고, 공인 글씨체를 시민이 공인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변경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근거 조항 규정 (안 제1조)

나. 공인 글씨체 변경 (안 제4조제1항)

(현행) 한글 전서체 → (변경안) 훈민정음 창제 당시의 자체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2022. 10. . ~ 2022. 10. .(20일간)

- 결 과:

2) 비용추계서: 비 추계대상

3) 규제예비심사: 비 심사대상

4) 성별영향분석평가: 완료

남원시 조례 제 호

남원시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원시 공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남원시공인(사업소 그 밖에 부속기관의 장 및 그 기관장의 보조기관에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을 포함한다)”을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40조의 규정에 따라 남원시공인”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사무관리규정(대통령령 제13390호)을”을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5조를”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전서체로”를 “훈민정음 창제 당시의 자체로 하여”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남원시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 비용추계 대상 여부

- 조례 제정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이 없어 「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4항제1호에 해당하여 비용추계 대상이 아님.

※ 「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4항제1호

제3조(작성대상) ① 비용추계는 의무적 또는 임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한다.

②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간접적인 부담이나 파급효과를 포함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법」 제15조에 따른 주민청구조례안에 대해서도 필요한 경우 비용추계서를 첨부할 수 있다.

④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비용추계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단, 제외 대상인 경우에도 비용추계서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2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가 곤란한 경우

붙임 관련 법령

■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5조(규격) 관인의 모양은 별표의 규격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행정기관의 장이 정한다.

제40조(공인)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에서 사용하는 공인(公印)에 관하여는 이 절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28조(관인의 내용) 관인의 글자는 한글로 하여 가로로 새기되, 국민이 쉽고 간명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그 기관 또는 직위의 명칭에 “인” 또는 “의인” 글자를 붙인다. 다만, 영 제34조에 따라 특수한 업무 처리에 사용하는 관인은 그 업무의 집행 목적에만 사용되는 것임을 그 관인의 인면(관인 중 글자가 새겨져 있는 부분을 말한다)에 표시하여야 한다.

■ 남원시 공인 조례

제2조(공인의 비치사용) ①시장, 사업소장, 부속기관의 장, 보조기관 및 회계관계 공무원은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인을 비치 사용한다.

의견제출서

1. 의견제출 목록		남원시 공인 조례안
2. 제출자	성명(명칭)	
	주 소	
3. 의 견		
4. 기 타		
<p>남원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6조(의견제출 및 처리)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2022년 월 일</p> <p>의견서 제출인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전 화 :</p> <p>남원시장 귀하</p>		
비 고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 할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를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제1호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원시 공고 제2022 - 2006호

「남원시 행정정보공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 등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남원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0월 11일

남 원 시 장

남원시 행정정보공개 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정보공개심의회 위원 구성 사항을 변경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정보공개심의회 구성 인원, 위원 구성 변경 (안 제16조제2항)

3. 입법예고기간 : 2022. 10. 11. ~ 2022. 10. 31. (20일간)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개인은 2022년 10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남원시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사항

-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이유)
-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나. 의견 제출할 곳

- (우 55738) 남원시 시청로 60, 남원시청 행정지원과 시정지원담당

다. 의견 제출 방법

- 직접방문 또는 우편발송(마감일 소인 유효), Fax(063-620-6704)
이메일(rijenje@korea.kr)

5.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남원시청 행정지원과(063-620-609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6. 남원시 행정정보공개 조례안 : 붙임

남원시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출연월일: 2022. 10.

제 출 자: 남 원 시 장

제안설명자: 행정지원과장

1. 개정이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정보공개심의회 위원 구성 사항을 변경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정보공개심의회 구성 인원, 위원 구성 변경 (안 제16조제2항)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2022. 10. . ~ 2022. 10. .(20일간)

- 결 과:

2) 비용추계서: 비 추계대상

3) 규제예비심사: 비 심사대상

4) 성별영향분석평가: 완료

남원시 조례 제 호

남원시 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원시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 중 “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를 “심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 1. 당연직 위원: 자치행정국장
- 2. 위촉직 위원: 정보공개 업무에 관한 지식을 가진 외부 전문가 (심의회 전체 위원의 3분의 2 이상 위촉해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6조(심의회 구성 및 임기) ① <u>심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u></p> <p>② <u>당연직 위원은 자치행정국장, 경제농정국장, 안전건설국장 및 보건소장을, 위촉직 위원은 정보공개 업무에 관한 전문적 식견을 가진 외부전문가 3명을 시장이 위촉하되,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u></p> <p>③ (생략)</p>	<p>제16조(심의회 구성 및 임기) ① <u>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u> ----- -----.</p> <p>② <u>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u></p> <p>1. <u>당연직 위원: 자치행정국장</u> 2. <u>위촉직 위원: 정보공개 업무에 관한 지식을 가진 외부전문가 (심의회 전체 위원의 3분의 2 이상 위촉해야 한다)</u></p> <p>③ (현행과 같음)</p>

남원시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 비용추계 대상 여부

- 조례 제정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이 없어 「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4항제1호에 해당하여 비용추계 대상이 아님.

※ 「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4항제1호

제3조(작성대상) ① 비용추계는 의무적 또는 임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한다.

②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간접적인 부담이나 파급효과를 포함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법」 제15조에 따른 주민청구조례안에 대해서도 필요한 경우 비용추계서를 첨부할 수 있다.

④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비용추계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단, 제외 대상인 경우에도 비용추계서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2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가 곤란한 경우

붙임 관련 법령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2조(정보공개심의회) ①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은 제11조에 따른 정보공개 여부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이 경우 국가기관등의 규모와 업무성격, 지리적 여건, 청구인의 편의 등을 고려하여 소속 상급기관(지방공사·지방공단의 경우에는 해당 지방공사·지방공단을 설립한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에서 협의를 거쳐 심의회를 통합하여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22.>

② 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심의회는 위원은 소속 공무원, 임직원 또는 외부 전문가로 지명하거나 위촉하되, 그 중 3분의 2는 해당 국가기관등의 업무 또는 정보공개에 관한 지식을 가진 외부 전문가로 위촉하여야 한다. 다만, 제9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주로 하는 국가기관은 그 국가기관의 장이 외부 전문가의 위촉 비율을 따로 정하되, 최소한 3분의 1 이상은 외부 전문가로 위촉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22.>

④ 심의회는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국가기관등의 장이 지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20. 12. 22.>

⑤ 심의회는 위원에 대해서는 제23조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⑥ 심의회는 운영과 기능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의견제출서

1. 의견제출 목록		남원시 행정정보공개 조례안
2. 제출자	성명(명칭)	
	주 소	
3. 의 견		
4. 기 타		
<p>남원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6조(의견제출 및 처리)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2022년 월 일</p> <p>의견서 제출인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전 화 :</p> <p style="text-align: center;">남원시장 귀하</p>		
비 고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 할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를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제1호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원시 공고 제2022 - 2008호

**도시계획시설(도로:소로1-46호선) 실시계획 열람 및
사업인정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청취 공고
- 드래곤관광단지 진입도로 개설사업 -**

남원 도시계획시설(도로:소로1-46호선)사업인 『남원 드래곤관광단지 진입도로(소로1-46호선) 개설사업』 시행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9조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실시계획의 열람과 사업인정에 관한 주민 및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듣고자 하오니, 이해관계가 있는 분이나 단체 등 의견이 있으시면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 원 시 장

2022년 10월 14일

1. 사업의 종류 : 남원 도시계획시설(도로:소로1-46호선)사업
2. 사업의 명칭 및 시행지의 위치, 사업의 규모
 - 가. 명 칭 : 남원 드래곤관광단지 진입도로(소로1-46호선) 개설사업
 - 나. 사업의 위치 및 규모
 - 사업의 위치 : 남원시 대산면 금성리 28번지 일원
 - 사업의 규모 : L=590m, B=11m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가. 성 명 : 남원시장(관광과)
 - 나. 주 소 : 전라북도 남원시 시청로 60
4.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 사업인가일부터 ~ 2024년 12월 31일
5. 사 업 비 : 6,200백만원(도비 1,250백만원, 시비 4,950백만원)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및 물건과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 붙임참조)
7. 열람기간 : 시보게재 익일부터 14일간
8. 열람장소 : 남원시청 도시과(063-620-6452)
9. 관계 도서는 남원시청 도시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붙임1.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 권외의 권리의 면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수용되거나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사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고
				공부상 면적 (㎡)	편입 면적 (㎡)	성명 또는 명칭	주소	성명또 는명칭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합계				39,145	19,024.1	-	-	-	-	-	-
1	금성리	673-11	구	300.7	300.7	농림축산 식품부					
2	금성리	673-13	구	8.4	8.4	농림축산 식품부					
3	금성리	675	도	96.7	2.0	농림축산 식품부					
4	금성리	675-1	도	7.1	5.0	농림축산 식품부					
5	금성리	648-20	답	79.5	79.5	선*철	전라북도 남원시 대*면 금*길 1*6				
6	금성리	648-24	답	205.0	205.0	선*철	전라북도 남원시 대*면 금*길 1*6				
7	금성리	648-12	도	2,763.1	372.0	남원시					
8	금성리	648-11	도	1,991.01	1,312.0	남원시					
9	금성리	648-10	도	105.8	98.0	남원시					
10	금성리	648-19	답	75.5	75.5	이*선	전라북도 남원시 대*면 금*리 2*3				
11	금성리	648-23	답	427.0	427.0	이*선	전라북도 남원시 대*면 금*리 2*3				
12	금성리	648-18	답	16.4	16.4	양*석	전라북도 남원시 대*면 금*리 2*6				
13	금성리	648-22	답	235.2	235.2	양*석	전라북도 남원시 대*면 금*리 2*6				
14	금성리	648-17	답	13.2	13.2	이*원	전라북도 남원시 대*면 금*리 2*4				
15	금성리	648-21	답	165.0	165.0	이*원	전라북도 남원시 대*면 금*리 2*4				
16	금성리	672	도	551.9	94.0	농림축산 식품부					
17	금성리	672-3	도	306.8	117.0	농림축산 식품부					
18	금성리	673-12	구	17.8	17.8	농림축산 식품부					
19	금성리	62-2	전	708.0	708.0	김*일	전라북도 남원시 대*면 금*길 1*4-*				
20	금성리	61-1	전	413.0	413.0	배*기	이천시 대*면 사*리 4*5 현**차아파트 6**-1*1				
21	금성리	59-1	전	867.0	867.0	이*재	전라북도 남원시 향*동 2*5 중앙**이츠아파트 2-1**3				
22	금성리	57-1	전	344.0	344.0	박*주	전라북도 남원시 용*로 2*1-2,10*동 90*호				
23	금성리	36-5	전	473.0	473.0	박*순	대전 서구 *동 2*-*1				
24	금성리	36-1	도	37.0	37.0	남원시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 고
				공부상 면적 (㎡)	편입 면적 (㎡)	성명 또는 명칭	주소	성명또 는명칭	주소	권리 의 종류 및 내용	
25	금성리	36-3	도	89.0	89.0	남원시					
26	금성리	36-4	전	59.0	59.0	박*순	대전 서* 내* 2*-*1				
27	금성리	38-10	전	191.0	191.0	이*성	전라북도 남원시 대*면 금*리 2*5				
28	금성리	39-1	전	546.0	546.0	김*기	남원시 화*동 5*4				
29	금성리	40-1	전	437.0	437.0	양*석	남원시 왕*동 1*-*6				
30	금성리	41-2	답	731.0	731.0	서*훈	서울특별시 서*구 잠*로1*길 5*,209호				
31	금성리	41-13	답	260.0	260.0	선*철 선*석 최*규	남원시대산면금*리2*0 남원시대산면금*리2*5 남원시대산면금*리2*2				
32	금성리	41-12	답	10.0	10.0	선*철 선*석 최*규	남원시대산면금*리2*0 남원시대산면금*리2*5 남원시대산면금*리2*2				
33	금성리	41-9	답	79.0	79.0	서*훈	서울특별시 서*구 잠*로*4길 *4,209호				
34	금성리	41-8	답	674.0	674.0	서*훈	서울특별시 서*구 잠*로1*길 *4,209호				
35	금성리	30-6	답	612.0	612.0	선*규	전라북도 남원시 서**길 *1-*1 (왕정동)				
36	금성리	산17-1	임	1,292.0	1,292.0	전주*씨진사 공임영대군 파*중	서울시 중*구 가*봉동 2*5-*4				
37	금성리	산20-10	임	22.0	22.0	이*현	전라북도 남원시 대*면 금*리 2*4				
38	금성리	산20-9	임	271.0	271.0	신**저 주식회사	전라북도 남원시 대산면 옥*리 산1*2-1				
39	금성리	산20-8	임	409.0	409.0	이*원	전라북도 남원시 대산면 금*리 2*1				
40	금성리	615-45	구	97.0	97.0	농림축산 식품부		온누리 신용협 동조합	남원시봉맛길 105	근저 당권 자	
41	금성리	28	전	1,729.0	1,729.0	이*윤	전라북도 남원시 가방뜰길 *7,1**동*04호	함중식	남원시오들 1길90,102 동408호	근저 당권 자	
42	금성리	산3-14	임	313.0	313.0	양**씨 석*공중중	전라북도 남원시 화*동 **3				
43	금성리	산3-6	도	17,460.0	1,594.0	남원시					
44	금성리	672-2	도	175.9	175.9	농림축산 식품부					
45	금성리	산3-9	임	28.0	28.0	양**씨 석*공중중	전라북도 남원시 화*동 **3				
46	금성리	673-7	구	6.2	6.2	농림축산 식품부					
47	금성리	672-4	도	19.7	19.7	농림축산 식품부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고
				공부상 면적 (㎡)	편입 면적 (㎡)	성명 또는 명칭	주소	성명또 는명칭	주소	권리 의 종류 및 내용	
48	금성리	산3-13	임	65.0	65.0	양**씨 석*공중중	전라북도 남원시 *정동 **3				
49	금성리	산3-12	임	101.0	101.0	양**씨 석*공중중	전라북도 남원시 *정동 **3				
50	금성리	673-10	구	335.7	335.7	농림축산 식품부					
51	금성리	672-1	도	222.9	222.9	농림축산 식품부					
52	금성리	615-44	구	15.0	15.0	농림축산 식품부					
53	금성리	63	전	8.0	8.0	김*일	전라북도 남원시 대산면 금*길 1**6				
54	금성리	60-2	답	5.0	5.0	전*자	전라북도 남원시 성**길 1*,3동 *06호				
55	금성리	60-1	답	128.0	128.0	전*자	전라북도 남원시 성*단길 1*,3동 *06호				
56	금성리	56-2	전	39.0	39.0	이*수	전라북도 남원시 대산면 금*리 2*5				
57	금성리	56-1	전	67.0	67.0	이*수	전라북도 남원시 대산면 금*리 2*5				
58	금성리	37-1	전	157.0	157.0	최*옥	전라북도 남원시 대산면 금*리 *7				
59	금성리	38-3	도	29.0	29.0	남원시					
60	금성리	38-7	도	54.0	54.0	남원시					
61	금성리	38-4	도	98.0	31.0	남원시					
62	금성리	38-8	도	72.0	14.0	남원시					
63	금성리	38-9	전	6.0	6.0	남원시					
64	금성리	38-5	전	46.0	31.0	남원시					
65	금성리	42-1	전	29.0	29.0	이*만	전라북도 남원시 대산면 금*리 **9	대산농 업협동 조합	남원시 대산면 운교리 465	근저 당권 자	
66	금성리	41-11	답	11.0	11.0	서*훈	서울특별시 서초구 잠*로1*길 *4,*09호				
67	금성리	41-10	답	23.0	23.0	서*훈	서울특별시 서초구 잠*로1*길 *4,209호				
68	금성리	17-1	답	112.0	112.0	이*성	서울 영등포구 대*동 *07-1 코오롱아파트 10*-1*04				
69	금성리	17-2	답	39.0	39.0	이*성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 *07-1 코오롱아파트 10*-1*04				
70	금성리	615-46	구	132.0	132.0	농림축산 식품부					
71	금성리	614	도	377.0	84.0	건설부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 고
				공부상 면적 (㎡)	편입 면적 (㎡)	성명 또는 명칭	주소	성명또 는명칭	주소	권리 의 종류 및 내용	
72	금성리	산20-11	임	321.0	321.0	신**저 주식회사	전라북도 남원시 대신면 옥*리 산1**-1				
73	금성리	28-2	전	594.0	594.0	박*식	서울 종로구 부*동 1*1-* 스카이빌라 디-*02				
74	금성리	산20-7	임	340.0	340.0	신**저 주식회사	전라북도 남원시 대신면 옥*리 산1**-1	우리 은행	서울시 중구 소공로 51(독립문 지점)	근저 당권 자	

수용되거나 사용할 물건조서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물 건 명	상황 및 구조	편입 수량	소 유 자		소유권이외의 권리명세 및 성명·주소			비고
						주 소	성 명	권리 명세	성 명	주 소	
1	남원시 대산면 금성리	675	전력주		1EA	세종특별 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 세종청사	농림 축산 식품부				
소계			1건								
2	남원시 대산면 금성리	산3-6	전력주		1EA	남원시 시청로 60	남원시				
소계			1건								
3	남원시 대산면 금성리	672-2	전력주		1EA	세종특별 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 세종청사	농림 축산 식품부				
소계			1건								
4	남원시 대산면 금성리	648-23	관정		1EA	남원시 대*면 금*리 2*3	이*선				
소계			1건								
5	남원시 대산면 금성리	648-11	전력주		1EA	남원시 시청로 60	남원시				
소계			1건								
6	남원시 대산면 금성리	648-10	전력주		1EA	남원시 시청로 60	남원시				
소계			1건								
7	남원시 대산면 금성리	672	전력주		1EA	세종특별 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 세종청사	농림 축산 식품부				
			대추나무		4주						
			감나무		1주						
소계			3건								
8	남원시 대산면 금성리	63	관정		1EA	남원시 대산면 금*길 1*4-6	김*일				
소계			1건								
9	남원시 대산면 금성리	673-10	감나무		3주	세종특별 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 세종청사	농림 축산 식품부				
소계			1건								
10	남원시 대산면 금성리	36-4	전력주		1EA	대전 광역시 서구 *동 2*-*1	박*순				
소계			1건								
11	남원시 대산면 금성리	38-8	전력주		1EA	남원시 시청로 60	남원시				
소계			1건								
12	남원시 대산면 금성리	40-1	묘지		3기	남원시 왕*동 1*-6	양*석				
			감나무		3주						
소계			2건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물 건 명	상황 및 구조	편입 수량	소 유 자		소유권이외의 권리명세 및 성명·주소			비고		
						주 소	성 명	권리 명세	성 명	주소			
13	남원시 대산면 금성리	41-8	전력주		1EA	서울 특별시 서초구 잠*로 1*길 *4, 209호	서*훈						
			창고	컨테이너 3.0*3.2	9.6㎡								
			감나무		3주								
소계			3건										
14	남원시 대산면 금성리	산20-10	묘지제단	대리석 1.2*1.1*0.7	1EA	남원시 대산면 금*리 2*4	이*현						
소계			1건										
15	남원시 대산면 금성리	28-2	측백나무		3주	서울 종로구 부*동 1*1-1 *카이 빌라 디-202	박*식						
			관목		1주								
소계			2건										
16	남원시 대산면 금성리	산20-8	묘지제단	대리석 1.3*0.9*0.5	1EA	남원시 대산면 금*리 2*1	이*원						
			납골당	대리석 5*6.5	1개소								
			측백나무		16주								
소계			3건										
17	남원시 대산면 금성리	28	전력주		1EA	남원시 가방뜰길 *7, 1*8/*04	이*윤	근저당권 자	온누리 신용협동 조합	남원시 봉맛길 105 (향교동)			
			조립식 건물	함석지붕	60.0㎡								
					45.0㎡								
					50.0㎡								
					50.0㎡								
					10.0㎡								
120.0㎡													
소계			2건										

◎ 남원시 공고 제 2022 - 2011호

도 로 지 정 공 고

건축법 제45조의 규정에 의거 건축신고 시 그 위치를 지정한 도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0월 12일

남 원 시 장

○ 도로지정 공고내역

지정 번호	대 지 위 치	건축주 성 명	허가(협의) 및 신고번호	도로 길이 (m)	도로 너비 (m)	도로 면적 (m ²)	이해관계인		
							지 번	편입면적 (m ²)	토지소유자
2022-35	남원시 운봉읍 주촌리 901-8(답)	김*명	2022-건축과- 건축신고-236	11.5	4	46	901-8	46	박*랑

남원시 공고 제2022 - 2019호

「남원시 물품 관리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 등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남원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0월 12일

남 원 시 장

남원시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상위 법령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개정사항 반영 (안 제36조)

- 회계연도마다 1회 이상 중요 물품의 증감 및 현재액을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공개하도록 함.

3. 입법예고기간 : 2022. 10. 12. ~ 2022. 11. 01. (20일간)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개인은 2022년 11월 0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남원시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사항

-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이유)
-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나. 의견 제출할 곳

- (우 55738) 남원시 시청로 60, 남원시청 재정과 계약담당

다. 의견 제출 방법

- 직접방문 또는 우편발송(마감일 소인 유효), Fax(063-620-6306)
이메일(kkamdaenge@korea.kr)

5.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남원시청 재정과(063-620-630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6. 남원시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붙임

남원시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출연월일: 2022. 10. .
 제출자: 남원시장
 제안설명자: 재정과장

1. 개정이유

상위 법령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개정사항 반영 (안 제36조)

- 회계연도마다 1회 이상 중요 물품의 증감 및 현재액을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공개하도록 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2022. 10. 7. ~ 2022. 10. 26. (20일간)

- 결 과:

2) 비용추계서: 비 추계대상

3) 규제예비심사: 비 심사대상

4) 성별영향분석평가: 완료

남원시 조례 제 호

남원시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원시 물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6조(물품 운영상황의 공개 등) 시장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92조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1회 이상 중요 물품의 증감 및 현재액을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관련 법령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92조(공유재산 및 물품 운영상황의 공개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1회 이상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황, 중요 물품의 증감 및 현재액을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4. 20.>

남원시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 비용추계 대상 여부

- 조례 제정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이 없어 「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4항제21호에 해당하여 비용추계 대상이 아님.

※ 「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4항제1호

제3조(작성대상) ① 비용추계는 의무적 또는 임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한다.

②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간접적인 부담이나 파급효과를 포함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법」 제19조에 따른 주민청구조례안에 대해서도 필요한 경우 비용추계서를 첨부할 수 있다.

④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비용추계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단, 제외 대상인 경우에도 비용추계서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2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가 곤란한 경우

의견제출서

1. 의견제출 목록		남원시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출자	성명(명칭)		
	주 소		
3. 의 견			
4. 기 타			
<p>남원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6조(의견제출 및 처리)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2022년 월 일</p> <p>의견서 제출인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전 화 :</p> <p>남원시장 귀하</p>			
비 고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 할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를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제1호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원시 공고 제2022 - 2020호

『남원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남원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0월 12일

남 원 시 장

남원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의3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각종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시민의 안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정의, 적용 범위 (안 제1조~제3조)

나. 시장의 책무, 다른 조례와의 관계, 사업주의 협조, 협력체계 구성 등
(안 제4조~제7조)

다. 산업재해 예방 대책 수립, 산업재해 예방 지원사업(안 제8조~제9조)

3. 입법예고기간 : 2022. 10. 12. ~ 2022. 11. 1. (20일간)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개인은 2022년 11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남원시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사항

-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이유)
-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나. 의견 제출할 곳

- (우 55738) 남원시 시청로 60, 남원시청 안전재난과 중대재해TF팀

다. 의견 제출 방법

- 직접방문 또는 우편발송(마감일 소인 유효), Fax(063-620-6747)
이메일(biggame2@korea.kr)

5.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남원시청 안전재난과(063-620-694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6. 남원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지원 조례안 : 붙임

남원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출연월일: 2022. 10. .
제 출 자: 남 원 시 장
제안설명자: 안전재난과장

1. 제정이유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의3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각종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시민의 안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목적, 정의, 적용 범위 (안 제1조~제3조)
- 나. 시장의 책무, 다른 조례와의 관계, 사업주의 협조, 협력체계 구성 등 (안 제4조~제7조)
- 다. 산업재해 예방 대책 수립, 산업재해 예방 지원사업(안 제8조~제9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산업안전보건법」 및 같은 법 시행령
- 나. 그 밖의 사항
 - 1) 입법예고
 - 기 간: 2022. 10. . ~ 2022. 10. . (20일간)
 - 결 과:
 - 2) 비용추계서: 비 추계대상
 - 3) 규제예비심사: 비심사대상
 - 4) 성별영향분석평가: 완료

남원시 조례 제 호

남원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의3에 따라 남원시에서 발생하는 각종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근로자 등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하고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산업재해”란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설비·원재료·가스·증기·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
2. “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
3. “사업주”란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4. “안전보건지킴이”란 남원시 관내 사업장에서 산업재해 위험 요소의 발굴·조사·개선·지도·건의 등을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5. “관리부서”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한국표준산업분류」 사업장 운영과 관련한 부서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남원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재한 모든 사업에 적용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 ①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 관내 사업장에서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자체 계획을 수립, 교육, 홍보 및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장 지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시 관내 산업재해 예방 및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사업주의 협조)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사업주(「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7조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자와 법 제78조에 따른 물건의 수거·배달 등을 중개하는 자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 및 건강을 유지·증진시키고 시의 산업재해 예방 대책을 따라야 한다.

1. 법령이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
2. 근로자의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을 줄일 수 있는 쾌적한 작업환경의 조성 및 근로조건 개선
3. 해당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를 근로자에게 제공
4. 안전보건지킴이의 사업장 출입·지도에 대한 협력
5. 그 밖에 시장이 추진하는 산업재해 예방 대책에 대한 협력

제7조(협력체계 구성 등) 시장은 산업재해 예방 대책 추진을 위하여 고용노동부, 지방고용노동(지)청, 산업안전보건공단, 노동조합 및 노동단체, 사업주 단체와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8조(산업재해 예방 대책 수립) ① 관리부서는 산업재해의 예방 및 감소를 위해 시 관내 산업재해 실태조사 및 산업재해 통계 현황 등을 기초로 산업재

해예방대책(이하 “예방대책”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예방대책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산업재해 예방대책의 기본방향
2.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증진을 위한 교육 및 홍보
3.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사업에 필요한 예산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산업재해 예방 지원사업) 관리부서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장 지도
2.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한 지자체형 안전보건지킴이 운영
3. 산업안전보건 관련 상담 및 위반행위 신고 지원
4. 그 밖에 시장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안전보건지킴이 제도 운영) ① 시장은 관내 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안전보건지킴이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안전보건지킴이로 위촉할 수 있다.

1. 산업안전보건지도사, 산업안전기사 등 산업안전보건 관련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2. 기업체, 산업안전보건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에서 안전보건 담당자로 3년 이상 활동한 사람
3. 고용노동부장관이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 위촉한 사람

③ 안전보건지킴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산업재해 관련 법규 위반행위의 신고

2. 산업재해 예방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사항 건의

3. 그 밖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

④ 시장은 안전보건지킴이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남원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 비용추계서

□ 비용추계 대상 여부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2억원 미만으로 「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4항제1호 해당되어 **비용추계 작성 대상이 아님.**

※ 「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4항제1호

제3조(작성대상)

- ① 비용추계는 의무적 또는 임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한다.
 - ②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간접적인 부담이나 과급효과를 포함할 수 있다.
 - ③ 「지방자치법」 제15조에 따른 주민청구 조례안에 대해서도 필요한 경우 비용추계서를 첨부할 수 있다.
 - ④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비용추계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단, 제외대상인 경우에도 비용추계서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2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가 곤란한 경우

붙임

관련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의2(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지방자치단체는 제4조제1항에 따른 정부의 정책에 적극 협조하고, 관할 지역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1. 5. 18.]

제4조의3(지방자치단체의 산업재해 예방 활동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 지역 내에서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자체 계획의 수립, 교육, 홍보 및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장 지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산업재해 예방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 활동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 5. 18.]

의견제출서

1. 의견제출 목록		남원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
2. 제출자	성명(명칭)	
	주 소	
3. 의 견		
4. 기 타		

남원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6조(의견제출 및 처리)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2년 월 일

의견서 제출인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전 화 :

남원시장 귀하

비 고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 할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를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제1호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